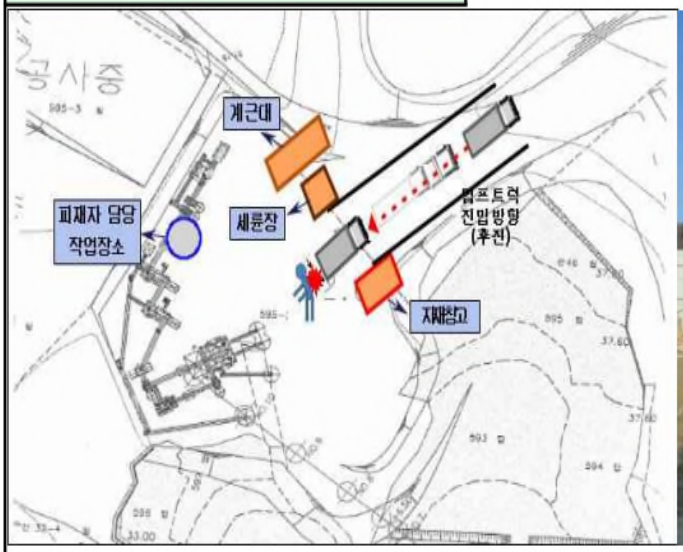
골재 상차작업 중 덤프트럭에 부딪힘

재해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지점에서 이동 중이던 근로자가 골재상차작업을 하기위해 후진하던 25.5톤 덤프트럭에 부딪혀 운전석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

재해상황(실제)

재해관련사진



【재해발생 상황도】



【재해발생 현장】

재해발생 원인(추정)

○ **위험한 장소에 근로자 출입**
- 운전 중인 덤프트럭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하거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 실시

○ **작업계획서 미 작성**
- 덤프트럭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

재해 예방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장 내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유해위험도출 및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

※ 차량 이동경로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로 구분 또는 휴게공간 분리 설치 등의 조치필요.

후진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협착

조심조심 코리아
서비스업

건설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분리하여 만들어낸 자갈을 덤프트럭에 담기위해 골재 야적장 쪽으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야적장 근처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재해자가 덤프트럭 뒷바퀴에 협착하여 사망



발생 원인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행기계 사용 시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음
-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작업 TIP

1 작업 유도 · 신호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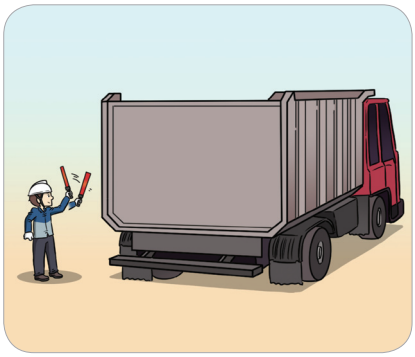
–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차량 등에 접촉되는 위험이 없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여 적절한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

2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전 작업계획서(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운전자와 근로자들이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3 차량 후진 시 경보음 장치 설치

– 차량 후진 시 경보음 장치를 설치하여, 후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유도자 배치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 KOSHA GUIDE G-10-2011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가이드)

후진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협착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하세요!

